

1. 학칙 시행세칙

제정 : 2000. 03. 01

개정 : 2019. 09. 03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정보대학원 학칙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업연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계약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최단 2년(4학기)으로 하고,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과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은 4년(8학기), 박사학위과정과 계약학과 박사학위과정은 7년(14학기), 통합과정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 단축할 수 있다.

제 2 장 교과 이수요건 및 수강신청

제3조 (이수학점)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7학점, 박사과정 55학점, 통합과정 55학점으로 하며, 이 55학점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30학점까지 가산할 수 있다.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39학점(논문대체 시 40학점) [단, 빅데이터과정 36학점(논문대체 시 37학점)]으로 한다.

제4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학위과정별로 매학기 1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계약학과(재교육형)의 경우 학사운영 필요에 따라 13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제4조의2 (지도교수) 본 대학원에서는 학생이 졸업 때까지 제반 학사업무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위한 학사지도교수를 배정하고, 학위논문 등의 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입학생으로부터 <정보대학원 희망 지도교수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희망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본 대학원 전임교수 가운데 학사지도교수를 배

정한다.

2. 학위논문 등의 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두며, 대상자로부터 <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원장이 본 대학원 전임교수 가운데 배정한다.
3. 연구주제가 정보대학원 전임교수의 전공분야와 무관한 경우, <정보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청강제도) 학생은 매학기 학점 없이 2과목까지 청강할 수 있으며, 청강 과목은 수강신청서에 기재하고 성적평가는 '이수필'(Pass:P)과 '이수미필'(Non Pass: NP)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6조 (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 입학 후에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을 본교 일반대학원 및 다른 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할 경우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이수하며,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내, 총 15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치고 석사과정에 입학했을 때에는 이미 이수한 교과과목 중 B학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고 9학점을 인정하며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원에 입학한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과목 중 B학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박사과정주임교수의 확인과 부원장 심사 및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본 대학원 입학 전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동일한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지도교수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7조 (유급) 매학기 소정의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을 한다.

제8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이수할 교과과목을 선택하여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 학생은 수강신청 결과를 학사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제적을 면할 수 있다.

제9조 (수강과목변경) 이미 수강신청 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 변경, 폐강된 과목,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 초 일정 기간 내에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과목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후의 잔여 신청과목은 최저 3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Withdraw)로 기재한다.

제11조 (재수강제도) ① 성적평가가 C⁻ 이하 나온 과목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는 성적평가에 재수강 표시를 하며, 이전에 평가된 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된다.

제12조 (폐강) 원장은 개설된 교과과목 중 수강신청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그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12조의2(통합과정심사위원회) ① 통합과정 학생은 3학기말에 박사과정 진학 여부에 대한 <통합과정 박사진학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합과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한다.

② 통합과정심사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박사과정주임교수, 원장이 추천하는 정보대학원 전임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임기는 보직자와 추천인 모두 보직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3(이수 요건) ① 본 대학원의 이수 교과목은 교과목위원회의 검토와 교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본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공트랙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칙 제3조 제3호의 계약학과의 이수 요건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1. 석사학위과정 : 아래 각 목별 최소이수학점을 필수로 37학점 이상 취득
 - 가. 공통필수 2과목(4학점)
 - 나. 전공필수 3과목(9학점)
 - 다. 전공심화 5과목(15학점)
 - 라. 일반선택 3과목(9학점)
 - 마. 졸업논문

2. 석사학위과정(맞춤형 융합) : 아래 각 목별 최소이수학점을 필수로 37학점 이상 취득
 - 가. 공통필수 2과목(4학점)
 - 나. 트랙맞춤(정보대학원 개설) 6과목(18학점)
 - 다. 트랙맞춤(연관대학원 개설) 5과목(15학점)
 - 라. 졸업논문

3.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 : 아래 각 목별 최소이수학점을 필수로 55학점 이상 취득
 - 가. 공통필수 2과목(4학점)
 - 나. 연구방법론 3과목(9학점)
 - 다. 세미나 4과목(12학점)
 - 라. 전공필수 3과목(9학점)
 - 마. 전공심화 4과목(12학점)
 - 바. 부전공 3과목(9학점)
 - 사. 박사학위과정 생을 위한 연구과목인 Independent Study1,2는 각종별로 최대 1과목만 적용하며, 종별선택에서 '필수과목'으로의 선택은 금지
 - 아. 졸업논문

제12조의4(교과목위원회) 교과목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박사과정주임교수와 원장이 추천하는 3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학업성적 및 출석

제13조 (시험) 시험은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 (학업성적) 매 학기의 정기시험에 있어서 수강과목 성적이 C⁻이상의 학점만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과정수료 및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전 이수과목이 평균 B⁰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성적등급·평점)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설명
A ⁺	4.3	100 ~ 97	우수
A ⁰	4.0	96 ~ 94	
A ⁻	3.7	93 ~ 90	
B ⁺	3.3	89 ~ 87	우량
B ⁰	3.0	86 ~ 84	
B ⁻	2.7	83 ~ 80	
C ⁺	2.3	79 ~ 77	양호
C ⁰	2.0	76 ~ 74	
C ⁻	1.7	73 ~ 70	
F	0	69 이하	불량
W	0		Withdraw
P, NP	0		청강, 연구

제16조 (출석일수)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3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성과 상관없이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시험 불응신고 및 추가시험

제17조 (시험불응신고) 정기시험을 사고로 인하여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불응신고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불응사유서) 시험불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병으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다.
2. 입대 및 병무소집 관계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소집영장 또는 입대 확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3. 직계가족 사망으로 불응한 자는 사망진단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불응한 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제19조 (추가시험) 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의2(성적정정) ① 확정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 등 성적정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학기 성적확인 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담당교수가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원을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19조의3(성적정정 제한)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인(평가자, 수강학생 등)을 출석시켜 의견 및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의4(성적평가 자료의 보관)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성적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최소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성적의 취소) ① 원장은 학생이 취득한 성적이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을 취소하고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② 해당 학생이 이미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1항에 의한 학점의 취소로 인해 졸업이수학점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 5 장 편입학자의 학기 및 학점

제20조 (학기·학점인정)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교수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원장이 결정한다. 단, 편입학자의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최대 2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 (제출서류) 전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학신청서
2. 편입 전 재학한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3. 기타 증빙서류

제 6 장 휴학, 퇴학, 제적, 복학 및 재입학

제22조 (일반휴학)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하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휴학신청서에 휴학사유서, 진단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입대휴학) 군 입대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신청서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휴학기간)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2년(4학기), 박사 3년(6학기), 통합과정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5조 (휴학신청) 미등록 휴학신청서의 제출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학생의 학기 중 휴학신청서의 제출은 학기 2/3선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수업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종합시험에 재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
5. 재학연한 초과자
6. 계약학과 학생 중 협약산업체 등에서 자원퇴직한 자

제28조 (자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에 자퇴이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신청서, 청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입학전형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입학 심의는 서류심사와 필요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모든 재입학은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모든 재입학의 허가는 1회에 한한다.

④ <삭제>

제30조 (학기·등록금) ① 등록을 마친 학생의 등록금은 휴학 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② 중간시험 이후 학기2/3선 해당일로부터 입대 휴학한 학생에 한하여 당해 학기는 인정되며, 당해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시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삭제

제 7 장 계약학과

제32조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석사·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34조 (계약학과의 명칭 및 학위명) ① 계약학과로 “정보미디어전략”, “빅데이터” 과정을 둔다.

② “정보미디어전략”, “빅데이터”는 재교육형으로 운영한다.

③ 학위명은 정보시스템학석사(정보미디어전략), 정보시스템학석사(빅데이터)로 한다.

제35조 (입학)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과 학업동의 및 지원을 확약 받은 자

제36조 (교육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7조 (교육과정 이수 인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38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은 39학점(논문대체 시 40학점) [단, 빅데이터과정 36학점(논문 대체 시 37학점)], 박사학위과정은 5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3. 각 과정의 필수요건 규정에 충족한 자

제39조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0조 (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그 부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1조 (수업료 등 납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전공주임 교수 책임 하에 관련 전공교수들이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계약학과 운영)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43조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박사과정 요람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6조, 제12조, 제15조, 제24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세칙(제3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세칙(제2조, 제22조, 제24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29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세칙(제2조, 31조, 제 7장)은 2007년 10월 18일부로 시행하며, 2008년 9월 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현재 IT경영전략 트랙 재학생은 계약학과로 소속 변경할 수 있다.
7. (시행일) 이 세칙(제8조, 제24조)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세칙(제6조의 3)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세칙(제29조)은 2012년 9월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 (시행일) 이 세칙(제2조, 제3조, 제6조, 제24조, 제29조)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11. (시행일) 이 세칙(제34조)은 2013년 9월부터 적용한다.
12. (시행일) 이 세칙(제34조)은 2014년 3월부터 적용한다.
13.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4조)은 2014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빅데이터과정은 2014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4. (시행일) 이 세칙 (제2조, 제3조 ,제34조, 제38조)은 2015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5.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4조, 제24조, 제34조, 제38조제1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장 표제, 제4조의2 신설, 제6조 제3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 신설, 제22조, 제29조 제4항 삭제,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2항, 제42조의2 신설)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의3 신설은 2015년 9월 입학생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신설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

제정 : 2000. 03. 01

개정 : 2019. 09. 03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외국어시험

제2조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TOEFL, TOEIC, TEPS, IELTS, TOEIC Speaking, OPICs 성적표로 대체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체 어학능력평가지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재교육형)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성적제출) ① 입학전형 지원서 접수 시 일정 성적 이상의 TOEFL, TOEIC, TEPS, IELTS, TOEIC Speaking, OPICs 성적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시험 신청 이전에 해당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위 기간 내에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를 할 수 없다.

제4조 (자격기준)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외국어시험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석사 / 박사	
내국인	TOEFL	PBT	550
		CBT	213
		IBT	79
	TOEIC	730	
	TEPS	580	
	IELTS	6.5	
	TOEIC Speaking	6	
	OPICs	IM2	
외국인	영어권	면제	
	비 영어권	내국인과 동일	

제5조 (유효기간) 외국어시험 성적표의 유효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표에 한함.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 3 장 종합시험

제8조 (응시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석사학위과정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25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으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②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재학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및 2차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2차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통합과정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재학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및 2차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2차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각 과정의 학생은 총평량평균이 3.00점 이상이어야 하며, 응시 기회는 각 과정별로 총 2회 부여한다.

제9조 (실시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말에 실시하며,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1차 종합시험은 2학기말 이후에, 2차 종합시험은 4학기말 이후에, 통합과정 학생의 1차 종합시험은 3학기말 이후에, 2차 종합시험은 6학기말 이후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응시절차)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정의 응시원서를 소정 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험과목) 학위과정별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공통필수(연구방법론) 1과목, 전공필수 2과목, 전공심화 1과목 총 4과목 응시

2. 박사학위과정

가. 1차 종합시험

- 1) 공통필수 : 연구방법론 1과목
- 2) 전공필수 : 각 트랙별 전공필수 2과목 선택
- 3) 전공심화 : 각 트랙별 전공심화 1과목 선택

나. 2차 종합시험 : 정보대학원 교수 5인 내외로 구성된 종합시험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위원은 원장, 부원장, 박사과정주임교수와 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1) 전공 : 1과목
- 2) 세미나 : 2과목

다. 통합과정 : 박사학위과정과 동일하다.

제12조 (출제범위) ① 석사학위과정은 공통영역 및 전공 트랙영역에 대한 기초 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1차 종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 및 부전공영역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③ 박사학위과정 2차 종합시험은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종합적 연구능력을 측정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13조 (출제 및 채점) ① 실제로 강의한 교수(외부교원 포함)가 문제 출제 및 채점을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2차 종합시험은 종합시험위원회에서 해당 교수에게 출제 및 채점을 의뢰한다. 다만 한 학생이 신청한 3과목에 대하여 1인의 교원이 출제와 채점을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합격기준) ① 종합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모든 과목에 합격하여야만 논문심사 자격 요건을 갖는다.

② 박사학위과정 1차 종합시험, 통합과정의 경우 공통과목에 한하여 본교 정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원생의 경우, 학사지도교수와 박사과정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1조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1차 해당과목의 취득 학점이 A⁰ 이상인 경우 과목별로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재 응시) 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1차, 통합과정 종합시험의 경우, 총 4과목 중 2과목 이상 불합격되면 다음 학기 종합시험에 재 응시 하여야 한다. 다만 1과목 불합격되는 경우 2주 이내 에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 2차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학기에 재 응시 하여야 한다. 다만 재 응시 하는 경우 불합격한 과목만 응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2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세칙(제8조, 제12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세칙(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세칙(제8조, 제9조, 제11조의 다, 제12조의 ④, 제14조, 제15조)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세칙(제2조, 제3조, 제4조)은 재학생 전체 대상으로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세칙(제8조의1, 제11조)은 2014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 1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학위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2000. 03. 01

개정 : 2019. 09. 03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나.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받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 다. 정규등록 4학기를 필 한 자 (단,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은 정규등록 2학기 이상 필 한 자)
- 라.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 심사 완료 예정인 자

2. 박사학위과정

- 가.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1·2차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나.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받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 다. 정규등록 4학기를 필 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 라.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 심사 완료 예정인 자
- 마. 통합과정 : 동조 2호(박사학위과정)와 동일하며, 단, 정규등록은 6학기를 필하고, 본 심사는 8년 이내에 완료 예정인 자

제3조 (학위논문) ① 석사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국문으로 작성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각 학위논문의 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 취급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있고 독자적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기존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의 2 (통합과정 학위논문) ①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 기준을 적용한다.

②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학위과정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논문 작성법) <삭제>

제 2 장 논문지도 및 심사

제5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본 정보대학원의 관련분야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단, 본 대학원 전임교수 가운데 연구주제의 전공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원장의 제청과 원장의 승인 하에 본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 학기 초에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소정 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지도교수결정) ① 부원장은 전조의 규정의 신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원장은 제청된 논문지도교수를 확정하고 논문지도를 위촉한다.

제8조 (논문연구계획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배정통지가 되면 소정기일 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논문제목변경) 전조의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제목변경원'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배정시기) 부원장은 논문제출자가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 논문심사위원을 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 선정방법 및 기능) 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위촉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인 경우 3인, 박사학위논문인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하며, 정보대학원 소속의 교수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③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위원장)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 3 장 학위논문제출

제14조 (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판종 : 4×6배판(18.5cm×25.5cm)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방식 : 양면, 마스타 인쇄로 한다. 경우에 따라 단면인쇄도 가능
4. 표지색깔 : 진한 감(紺)색
5. 제본식 : 클로스 양장
6. 표지인쇄방식 : 다음 [도해 1]에 따르되, 명조체 2호 활자로 금색인쇄

7. 속표지의 양식 : [도해 2]에 따른다.
8. 제출서양식 : [도해 3]에 따른다.
9. 인준서양식 : [도해 4]에 따른다.
10. 논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
 - 가. 속표지
 - 나. 제출서
 - 다. 인준서
 - 라. 차례
 - 마. 국문요약(2페이지 이내)
 - 바. 본문
 - 사. 참고서적 목록
 - 아.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 자. 영문요약(2페이지 내외)

제15조 (논문편제) 논문편제 및 서술방식은 연세대학교 논문작성법 편찬위원회 편, "연세대학교 대학원 새논문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제 4 장 학위논문 예비심사

제17조 (심사논문제출) ① 학위논문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부, 박사학위 과정은 5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일 이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학기에 심사한다.

제18조 (심사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학술발표회를 통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소정기일 내에 예비심사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사판정) ① 논문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 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②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③ 판정은 가, 부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인쇄) 논문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제출자는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후 지도교수로부터 인쇄회부 승인을 받아 논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위논문 본심사

제21조 (본심사 논문제출) ① 학위논문작성자는 본심사를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부, 박사학위과정은 5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일 이후에 행정팀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학기에 심사한다.

③ 입학일 이후부터 본심사 논문제출 전까지 SSCI, SCIE에 주저자(제1저자)로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확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본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를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행한다.

② 논문을 제출한 학생이 전항에서 정한 시간에 심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동의하에 추후에 심사할 수 있으나,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④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⑤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 (논문평가방법)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
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
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구두시험) ①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두시험을 행한다.

② 구두시험의 평가방법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학위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1학기 이상
경과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학위논문의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 6부를 학술정보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27조 (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 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제3조의 2)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의 다)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세칙(제3조의 2)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2호, 제3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4항, 제22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 제3항은 2018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1호 다목)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2000. 03. 01

개정 : 2019. 09. 03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28조에 관한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1. 석사학위과정

가. 3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다.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단,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마. 논문 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바. <삭제>

사. <삭제>

2. 박사학위과정

가. 학칙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55학점 이상)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 자

다.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1차·2차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 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마. 논문의 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바. <삭제>

사. 학위논문 본심사 제출 전 SSCI, SCIE에 주저자(제1저자)로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 확정된 자. 단, 입학일 이후 게재한 논문에 한한다.

3. 통합과정 : 동조 나호(박사학위과정)와 동일하며, 단, 정규등록은 6학기를 필하여야 함.

제3조 (학위수여자 사정) 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

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조 (학위수여)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본 대학원학칙 제28조에 명시된 대로 과정별 세부전공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 (보고) <폐지>

제6조 (학위수여 시기 및 횟수)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제7조 (명예박사학위) <삭제>

제8조 (학위기 양식) 우리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다음과 같다.

※ 도해참조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제2조, 제4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은 2007년 10월 18일부로 시행하며, 2008년 9월 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현재 IT경영전략 트랙 재학생은 계약학과로 소속 변경할 수 있다.
6.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7. (경과규정) 본 세칙 중 제2조 가, 항 7호는 시행일 이전 재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세칙 제 2조 나, 항 7호는 2011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의 다)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10.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의 가항 7호 <삭제>은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경과규정) 2013년 1학기에는 석사과정 4학기 이상 등록자의 종합시험 응시와 논문지도의 병행을 허용한다.
11.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의 가항 1호, 나항 2호)은 2014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4조 및 제7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 나항 제7호는 2018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1호 라목)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정보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제정 : 2002. 3. 1.

개정 : 2018.10. 8.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지급자) 각종 장학금의 수급자수와 금액은 대학원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
3. 기타 장학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조 (장학금의 지급구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에서 관장하는 장학금 가운데 성적우수장학금과 조교장학금은 동일 학생에게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장학금 지급대상)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해당 장학금 지급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신청자격) 복학 및 재입학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선발기준)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은 다음의 각 호를 충족시킨 후에 해당 장학금의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학업성적이 3.0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매 학기 장학금 수혜횟수를 고려한다.
3.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신청학점이 많은 학생, 학기 등록횟수가 적은 학생 등의 순으로 지급한다.
4.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휴학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장학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복학 시에 장학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제 2 장 대학원 장학금

제9조(장학금의 종류) 대학원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 장학금
2. 조교 장학금
3. 특별 장학금

제10조 (성적우수 장학금)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11조 (조교장학금)

1. 조교 선발은 전체교수와 협의하여 부원장이 매 학기초에 결정한다.
2. 조교 장학금의 인원 배정은 매 학기 별로 한다.
3. 조교로 선발된 자는 학기 중에는 행정팀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근

무지에 정규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근무 감독은 지도교수가 한다.

제12조 (특별장학금) 대학원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원생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국가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 등) 지급단체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은 폐지한다.
4. (시행일) 이 규정 (제8조의 4)은 2012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5조 및 제11조)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